



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2026. 5.

부 산 대 학 교

-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은 교육부의 입학정원 조정 결과나 학칙개정, 감염병 및 천재지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우리 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원서접수 전에 반드시 모집요강을 숙지하고 부산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입학처 입학과 재외국민특별전형 담당자 앞
[TEL] 051)510-1202~3, 1063~4
[입학정보 홈페이지] <http://go.pusan.ac.kr>

[사전 예고(입학홈페이지,2025.6.12.)에 따라, 부산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2028학년도부터 폐지됩니다.]

목 차

전형안내

I. 전형일정	1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III. 모집단위 관련 안내사항	5
IV.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6
V. 전형방법	13
VI. 선발방법	16
VII.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안내	17
VIII.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
IX. 지원자 유의사항	21

서식

1. 입학원서	23
2. 지원자격 심사신청서	24
3. 외국학교 학기 기록표	26
4.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및 위임장	27
5. 포트폴리오 서약서	29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0

부록

1. 대학생활 안내	31
2. 기관별 전화번호 안내	32

I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한국 표준시간 기준)	장 소	비 고
원서 접수	2026. 7. 7.(화) 10:00 ~ 7. 10.(금) 17:00	입학정보 홈페이지 (http://go.pusan.ac.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후 수험표를 출력하고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2026. 7. 7.(화) ~ 7. 13.(월)	등기우편 제출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 부산대학교 입학처 입학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담당자 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우편은 2026.7.13.(월) 소인 까지 유효합니다. • 방문 제출 불가
포트폴리오(서약서 포함)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학과, 디자인학과 지원자에 한함
면접 및 실기고사 안내	2026. 8. 5.(수) 16:00(예정)	입학정보 홈페이지 (http://go.pusan.ac.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장소 및 입실시간 등
면접고사 실기고사	2026. 8. 19.(수)	모집단위 별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진행으로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합격자 발표	2026. 9. 18.(금) 16:00 (예정)	입학정보 홈페이지 (http://go.pusan.ac.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기간 내에 '온라인 문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2026. 12. 21.(월) 10:00 ~ 12. 23.(수) 16:00		
총원 합격 발표	합격자 발표	입학정보 홈페이지 (http://go.pusan.ac.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전형은 미등록이 발생해도 총원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기간 내에 '온라인 문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온라인 문서등록		
합격자 등록금 납부	2027. 2. 10.(수) 10:00 ~ 2. 12.(금) 16:00	학교 지정 은행 (현금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합격자도 고지된 금액(학생의료공제회비)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위 일정은 우리대학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전교원정아자 북한이탈주민
			모집인원	최대선발가능인원	
인문대학	인문·사회	국 어 국 문 학 과	약간명	2	
		중 어 중 문 학 과		3	
		일 어 일 문 학 과		3	
		영 어 영 문 학 과		4	
		독 어 독 문 학 과		2	
		노 어 노 문 학 과		2	
		한 문 학 과		2	
		언 어 정 보 학 과		2	
		사 학 과		2	
		철 학 과		2	
		고 고 학 과		2	
사회과학대학	인문·사회	행 정 학 과	약간명	3	약간명
		정 치 외 교 학 과		3	
		사 회 복 지 학 과		3	
		사 회 학 과		3	
		심 리 학 과		3	
		문 헌 정 보 학 과		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	
경영대학	인문·사회	경 영 학 과	약간명	20	
경제통상대학	인문·사회	무 역 학 부	약간명	7	
		경 제 학 부		8	
		국 제 학 부		2	
		관 광 컨 벤 션 학 과		2	
		공 공 정 책 학 부		2	
생활과학대학	인문·사회	아 동 가 족 학 과	약간명	2	
		의 류 학 과		3	
		실 내 환 경 디 자 인 학 과		2	
	자연	식 품 영 양 학 과		3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전교역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모집인원	최대선발가능인원	
자연과학대학	자연	생 명 과 학 과		약간명	4	
		분 자 생 물 학 과			4	
		대 기 환 경 과 학 과			3	
공과대학	자연	기 계 공 학 부		약간명	27	
		고 분 자 공 학 과			4	
		유 기 소 재 시 스템 공 학 과			4	
		환 경 공 학 과			3	
		재 료 공 학 부			8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전공		6	
			전자공학전공		7	
			반도체공학전공		4	
		건 축 공 학 과			3	
		도 시 공 학 과			3	
		사 회 기 반 시 스템 공 학 과			7	
		항 공 우 주 공 학 과			4	
조 선 · 해 양 공 학 과		7				
간호대학	자연	간 호 학 과		약간명	8	
생명자원과학대학	인문·사회	식 품 자 원 경 제 학 과		약간명	2	
	자연	원 예 생 명 과 학 과			2	
		식 품 공 학 과			3	
		생 명 환 경 화 학 과			2	
		바 이 오 소 재 과 학 과			2	
		바 이 오 산 업 기 계 공 학 과			3	
		I T 응 용 공 학 과			2	
		바 이 오 환 경 에 너 지 학 과			2	
		조 경 학 과			3	
SI대학	자연	SI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약간명	8	
			인공지능전공		6	
			인터랙티브컴퓨팅전공		1	
		산 업 공 학 부	6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모집인원	최대선발가능인원	
예술대학	예술	예술문화영상학과	약간명	2	약간명
		음악학과(성악전공/피아노전공/ 작곡전공/관현악전공)	약간명 (5명 이내)	5	
		한국음악학과(현악성악전공/ 관악타악전공/이론작곡전공)		3	
		무용학과(한국무용전공/ 발레전공/현대무용전공)		3	
		조형학과(도예전공/ 가구목조형전공/섬유금속전공)		2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애니메이션전공)		3	
계			60명 이내		

※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전형은 입학정원의 2% 범위(모집단위별 10% 이내)에서 선발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약간 명 선발함

1) 시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전공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인공지능전공과 공동학과로 운영함

III 모집단위 관련 안내사항

1. 대학 소재지 현황

대학	소재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 경제통상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 SI대학	부산캠퍼스
간호대학	양산캠퍼스
생명자원과학대학	밀양캠퍼스

※ 양산캠퍼스, 밀양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며, 부산대학교의 특성화된 단과대학이 소재하는 캠퍼스입니다.

2. 교직과정 설치 모집단위

대학	모집단위(전공)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분자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전기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부(전자공학전공), 항공우주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경제통상대학	경제학부
간호대학	간호학과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실내환경디자인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식품공학과
예술대학	음악학과, 한국음악학과, 예술문화영상학과

※ 교직과정 설치 학과는 2026학년도 입학자 기준 교직과정이 설치된 모집단위이며, 교직과정 설치 여부와 선발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우리 대학교 교육인증 프로그램

- 공과대학 기계공학부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한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간호법」 제4조에 따라,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 간호대학은 2025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평가·인증을 받음(인증기간 : 2026. 6. 13. ~ 2029. 6. 12.)

4. 의·약학계열 결격 사유 관련 사항

- 아래 대학의 경우 관련법에 의한 결격사항이 있어 졸업 후 해당 분야 자격 취득 및 진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간호대학 : 의료법 및 간호법에 의한 의료인 결격 사유자

IV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입학정원 2% 이내)

1.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국외근무자(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3년 이상 재학한 자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내용
국외 재학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 체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
국외 근무자 재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

국외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년(Calendar Year)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 근무자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 재학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 개시 일부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 일부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 일부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 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국외 체류일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 일부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2. 지원자격 인정기준

-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함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2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3학년제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는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예시] 중복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이수는 국내 고등학교 이수로 간주됩니다.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재학기간만 인정됩니다.
 - 유치원과정, 어학연수(ESL)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지원자격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졸업예정자는 2027년 2월 26일까지 졸업해야 합니다.
 - 단,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 재학기간 및 체류 등 지원자격에 대한 최종 인정 여부는 우리 대학교 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3. 재학기간 인정기준

- 부모(국외근무자)의 근무(파견) 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 단,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지역상황(전쟁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국외 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중첩되는 기간만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학기제는 국내 학제에 준하여 1년 2학기제 기준으로 하며, 3학기제 또는 4학기제의 경우 2학기제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1년 2학기제 운영 기준)를 이수한 경우 재학기간 1년으로 인정합니다.
 - 3학기제나 4학기제인 경우 해당학기(3학기 또는 4학기)를 이수해야 함
- 해당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합니다.

4. 근무·체류일수 기준

- 국외근무 재직기간 및 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합니다.
- 국외근무 재직기간은 통산 3년(1,095일) 이상입니다.

국외 파견 재직자	국외 파견 발령 기간 기준
현지 취업자	입사일 기준
현지 자영업자	국외 세금 납부 기간 기준

- 체류 조건

1개 학년	학생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부모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온라인 수업 진행시 체류국가와 관계없이 재학기간은 인정하지만, 해당기간에 국내 체류시 국외 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이란, 이스라엘 및 중동 7개국(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일부지역*, 요르단 일부지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함

* 라스 탄누라 지역(아람코 정유시설 위치), 샤이바 유전지대 반경 20km, 프린스술탄 공군기지 반경 20km

** 자르카 시 동편 경계선의 동부 지역

- 체류기간 기준
 - 일 반 : 학기 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 편입학 : 편입학일 ~ 편입학일로부터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 체류조건에 예외는 없습니다.
 - 학기종료일 이후 학사일정이 없는 경우(방학 등)에도 체류기간의 축소·변동 없이 학기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로 산정

5. 필수 제출서류

서류명		비고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서식 2-1)		초등학교부터 연도별 순서에 의해 수학한 모든 학교 기재
외국학교 학기 기록표(서식 3)		
초·중·고등학교 재학·성적증명서		·재학기간(연/월/일)확인할 수 있어야 함 ·국외 성적증명서는 Official Transcript 형식으로 제출 ·국내는 학교생활기록부로 제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국외 재학 학년의 학기 개시일, 종료일을 알 수 있는 학사일정표 제출(School Calendar, 홈페이지 출력·캡처본, 브로셔 제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원자 본인/부모 각 1부, 중·고(G7~G12) 6년간의 출입국 기록
여권사본		지원자 본인/부/모 각 1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지원자 본인/부/모 각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6)		지원자 부모 1부
포트폴리오 및 포트폴리오 서약서 (해당자 필수 서류)		조형학과, 디자인학과 지원자
해외 파견 재직자	재직증명서 ¹⁾	파견증명서, 근무 국가 및 외국 근무 기간 명시
	해외지사설치인증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 ²⁾	사본 제출시 발급은행의 원본대조필 필수
현지 취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외국정부발행)	
	국외 재직회사 법인세 납부이력 ³⁾	
현지 자영업자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³⁾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 및 위임장		지원자 본인/부/모 각 1부

- 1) 해외파견 내용기재가 된 본사 발행 서류로, 해외 발령일 및 귀임발령일(예정일)이 기재되어야 함
선교사의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이 된 법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2) 파견기간 이전에 수리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국 법인명과 해외직접
투자신고서에 나오는 파견국 법인명이 일치되어야 함.(외국환 은행 발급 가능)
단, 해외파견 공무원, 외국정부, 국제기구와 같이 본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
- 3)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개인소득세 납부 영수증 제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는 2026년 6월 5일(금)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함

■ 전 교육과정 이수자

1. 지원자격

- 국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국외 학교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2. 지원자격 인정기준

- 부정·편법·약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함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2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3학년제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는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정·편법·약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이수는 국내 고등학교 이수로 간주됩니다.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재학기간만 인정됩니다.
 - 유치원과정, 어학연수(ESL)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지원자격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수학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단, 12년 미만 이수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졸업예정자는 2027년 2월 26일까지 졸업해야 합니다.
 - 단,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 재학기간 등 지원자격에 대한 최종 인정 여부는 우리 대학교 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3. 필수 제출서류

서류명	비고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서식 2-2)	초등학교부터 연도별 순서에 의해 수학한 모든 학교 기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성적증명서	·재학기간(연/월/일)확인할 수 있어야 함 ·성적증명서는 Official Transcript 형식으로 제출 ·재외한국학교(교육부 인가)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국외 재학 학년의 학기 개시일, 종료일을 알 수 있는 학사일정표 제출(School Calendar, 홈페이지 출력·캡처본, 브로셔 제출 가능)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원자 본인, 초~고(G1~G12) 12년간의 출입국 기록
여권사본	지원자 본인 1부
포트폴리오 및 포트폴리오 서약서 (해당자 필수 서류)	조형학과, 디자인학과 지원자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 및 위임장	지원자 본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2026년 6월 5일(금)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함

■ 북한이탈주민

1.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2. 필수 제출서류

서류명	비고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 국외고교 졸업(예정)자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 고교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 북한학교 출신자 중 고교졸업학력 인정자 : 학력인정증명서 (시·도 교육청 발급)
포트폴리오 및 포트폴리오 서약서 (해당자 필수 서류)	조형학과, 디자인학과 지원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는 2026년 6월 5일(금)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함

V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배점

계열 구분		전형 요소		전형 총점
		면접고사	실기고사	
인문·사회 / 자연		100점	-	100점
예술	예술문화영상학과			
	음악학과, 한국음악학과, 무용학과, 조형학과, 디자인학과	50점	50점	100점

2. 전형요소별 평가기준

가. 면접고사

- 평가기준

계열	영역	평가기준	배점	비고
인문·사회, 자연, 예술(예술문화영상학과)	전공수행 기초능력	전공 학업수행을 위한 기초학업 역량 및 문제해결능력 등	80점	국제학부는 영어 에세이 및 면접 실시
	인성 및 사회성	품성과 태도, 의사소통능력 등	20점	
예술(음악학과, 한국음악학과, 무용학과, 조형학과, 디자인학과)	전공수행 기초능력	전공 학업수행을 위한 기초학업 역량 및 문제해결능력 등	30점	포트폴리오 제출학과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의응답 포함
	인성 및 사회성	품성과 태도, 의사소통능력 등	20점	

- 면접고사 방법

-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인을 평가합니다.
- 면접시간 : 10분 내외

나. 실기고사 과제 및 배점

① 음악학과 [문의처: 음악학과 사무실 051) 510-1737]

• 전공별 과제

전공	과제	배점	비고
성악	① 독일가곡 1곡, ② 이태리가곡 1곡, ③ 한국가곡 1곡 ※ ①②③ 모두 준비. 3분씩 연주	50	유절가곡의 경우 심사위원 재량으로 중단할 수 있음
피아노	베토벤 소나타 빠른 1악장을 포함한 10분 내외 프로그램	50	
작곡	전공실기: 전통화성 전반에 걸친 풀이 피아노실기: 피아노 소나타 빠른 한 악장	50	화성풀이 이후 피아노 실기 시험 진행
관현악	콘체르토 전악장 또는 15분 내외의 자유곡	50	

- 관현악 전공은 다음 악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관악(8) : 플루트, 클라리넷, 바순, 호른, 트럼펫, 트롬본, 베이스트럼본, 튜바
 - 현악(4) :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더블베이스
- 유의사항
 - 악기(피아노 제외)는 지원자가 지참하여야 합니다.
 - 성악전공을 제외하고 반주자는 동반할 수 없습니다

② 한국음악학과 [문의처: 한국음악학과 사무실 051) 510-1739]

• 전공별 과제

전공	과제	배점	비고
현악·성악	현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야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악 : 현악영산회상 중 1곡 2) 산조 : 진양조, 자진모리 중 선택 ■ 거문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악 : 자유곡 2) 산조 : 진양조, 자진모리 중 선택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악성악전공, 관악타악전공, 작곡전공은 실기고사 시 반드시 아래의 복장으로 응시하여야 함 (이론전공 제외) -여 : 흰색 상의(블라우스, 셔츠), 검정색 바지, 긴머리는 뒤로 묶음 -남 : 흰색 셔츠, 검정색 바지 ■ 작곡, 화성풀이시 전자건반(신디사이저) 개인악기 지참 및 사용도 가능. 단, 헤드폰(이어폰) 필수
	성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야금 병창: 단가 중 1곡, 단가 외 1곡 ■ 경기민요: 12잡가 중 1곡, 경기민요 중 1곡 ■ 가곡(남창, 여창): 시조 중 1곡, 가곡 중 1곡 ■ 판소리: 단가 중 1곡, 판소리 5바탕 중 한 대목 	50	
관악·타악	관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쟁, 해금, 피리, 대금 1) 정악 : 평조회상 중 1곡 2) 산조 : 진양조, 자진모리 중 선택 	50	
	타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악장단 : 당일 제시곡 연주하기 ■ 민속악장단 * 세마치, 엇모리, 굿거리, 자진모리 포함 1분정도 연주하기 * 설장구 또는 팽과리 1분 정도 연주하기 (택1) 	50	
이론·작곡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악 관련 논술 	50	
	작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곡 : 주어진 주제선율에 의한 피아노 또는 국악기 독주곡(자유선택) 작곡(16마디 이상) ■ 화성풀이 : 부3화음 범위까지의 주어진 문제풀이 (Soprano, Bass 문제 각각 1문제씩) ■ 연주실기 : 대금, 피리, 해금, 아쟁, 가야금, 거문고, 피아노, 장구 중 자유악기 자유곡 1곡 연주 (2분 내외) 	50	

- 유의사항
 - 악기는 지원자가 지참하여야 하며, 모든 연주는 암보로 해야 합니다.
 - 반주자는 동반할 수 없습니다

③ 무용학과 [문의처: 무용학과 사무실 051) 510-1740]

- 전공별 과제

전공	실기 내용		작품에 포함되어야 하는 동작 구성요소	배점
한국무용전공	한국무용	수험생이	이동 동작 시 다양한 보법을 응용-조합, 제자리에서 멈추어 어르기	50점
발레전공	발레	준비한	-	
현대무용전공	현대무용	작품 실시	Leap jump, Turn, Balance, Step sequence	

가. 실기 작품은 수험생이 준비한 작품 1분 30초 ~ 2분(± 5초)이며, 음악은 각자가 준비하여 MP3 파일을 USB에 담아 실기고사 당일 제출해야 합니다.(예비용 USB지참)

- * 음악의 시작점이 작품의 시작점이 됨을 원칙으로 합니다.(음악 시작 전에 동작을 시행할 수 없음)
- * 장치나 소도구는 일절 사용할 수 없으며, 제출한 USB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머리는 기본형으로 가르마 없이 단정히 뒤로 모아 묶어 망으로 고정합니다.(앞머리, 잔머리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마와 귀가 모두 보이도록 함. 남녀 동일함)

다. 지정해 준 머리, 의상, 신발에 어떠한 장식도 해서는 안 됩니다.

라. 분장(화장)은 일절 금지합니다.

마. 실기내용 : 수험생이 준비한 작품

바. 실기고사 시 반드시 아래의 복장(의상, 신발) 규정으로 응시해야 합니다.(개인이 준비하여 실기고사 당일 지참함)

전공	남	여
한국무용	백색 바지, 저고리(무지), 백색 버선 또는 흰색 코슈즈 * 껌자는 본교에서 당일 지급	백색 꼬리치마, 저고리(무지, 동정과 고름도 흰색), 백색 버선 또는 흰색 코슈즈 * 허리끈은 본교에서 당일 지급
발레	기본 U자형 면스판 검정색 긴소매 레오타드(상의), 검정색 발 있는 타이즈(하의), 흰색 슈즈	기본 U자형 면스판 검정색 긴소매 레오타드(상의), 핑크색 타이즈(하의), 연분홍색 토슈즈
현대무용	기본 U자형 면스판 검정색 긴소매 레오타드(상의), 검정색 무용복 바지(허리부터 발목까지 길이, 발목이 붙는 타이즈형 바지), 맨발	기본 U자형 면스판 검정색 긴소매 레오타드(상의), 검정색 발 없는 타이즈(하의), 맨발

④ 조형학과 [문의처: 조형학과 사무실 051) 510-7420]

- 전공별 과제

전공	과제	배점	비고
도예	포트폴리오(자유주제) * 칼라 사진(25×20cm) 10작품 이상	50	제출된 포트폴리오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미제출자는 면접고사 응시불가)
가구목조형		50	
섬유금속		50	

⑤ 디자인학과 [문의처: 디자인학과 사무실 051) 510-1736]

- 전공별 과제

전공	과제	배점	비고
시각디자인	포트폴리오(20작품 이내, 자유형식)	50	제출된 포트폴리오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미제출자는 면접고사 응시불가)
애니메이션		50	

Ⅵ 선발 방법

1. 선발 기준

가.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입학정원 2% 이내)

- 선발대상(불합격자 제외)을 정하고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전형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단위별 최대 선발 가능 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선발대상 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모집단위별 최대 선발 가능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대상 모두를 합격자로 선발하고, 나머지 불합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예비합격 후보자로 선발함
 - 선발대상 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형방법에 따라 우선 선발인원을 배정하되, 모집단위별 최대 선발 가능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함. 단, 합격인원이 우선 선발인원에 미달할 경우, 우선선발 배정 이외의 모집단위에서 전형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총원함
 - ※ 우선 선발인원 : 예술대학(예술문화영상학과 제외) 5명, 이외 모집단위 55명
- 불합격 처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발되지 않은 자를 예비합격 후보자로 선발합니다.
 - 전형성적 순으로 예비 순위를 부여하되, 순위는 공개하지 않음
- 합격자(총원합격자 포함)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 발생시 예비합격 후보자 순으로 모집단위별 최대 선발 가능 인원 범위 내에서 총원합니다.

나.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 불합격 처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전원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전형은 예비 순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2. 불합격 처리기준

- 가. 제출기간 내 구비서류 미제출자
- 나. 지원자격 심사 결과 부적격자
- 다.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결시자
- 라. 과락자(면접고사 60% 미만인 자, 실기고사 60% 미만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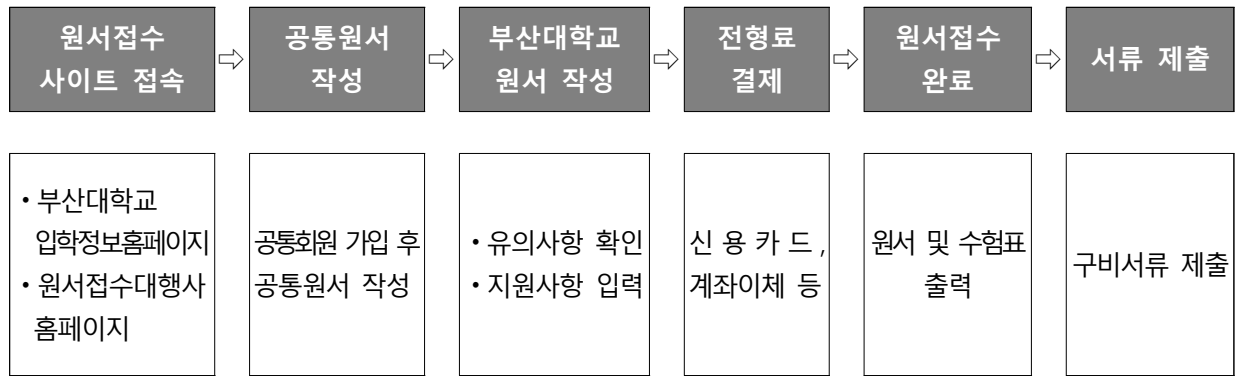
3. 동점자 처리기준

- 가. 1순위 : 면접고사 고득점자
- 나. 2순위 : 실기고사 고득점자(해당 모집단위에 한함)
- 다. 3순위 : 면접고사 평가영역 내 '전공수행 기초능력' 고득점자
- 라. 4순위 : 면접고사 평가영역 내 '인성 및 사회성' 고득점자

VII 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안내

1. 원서접수

- 접수 기간 : 2026. 7. 7.(화) 10:00 ~ 7. 10.(금) 17:00
- 접수 방법 : 인터넷접수



- 입학정보홈페이지(<http://go.pusan.ac.kr>) 또는 원서접수 대행사 사이트 접속
 - 사용자 로그인(비회원인 경우는 회원 가입합니다)
 - ※ 통합회원 가입을 통해 진학어플라이와 유웨이어플라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순서대로 원서 작성(본인의 증명사진 3cm × 4cm upload) 또는 여권용 사진(3.5cm × 4.5cm upload) 하시고 원서 기재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함
 - 전형료 결제, 원서 접수 확인
 - ※ 결제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결제 전에 입력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 및 수험표 출력(원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수험표는 보관)
 - 구비서류 제출

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유의사항

- 원서 접수할 때 유의사항(지원 자격, 전형일정, 전형료,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은 2026. 7. 10.(금) 17:00까지이며, 모든 기재 사항을 입력하고 전형료를 결제해야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 인터넷 접수 시 입력 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 사항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원서 접수 시 기재하는 '연락처'는 지원자와 연락이 가능한 국내 연락처를 입력하여야 하며, 연락처 오기 또는 변경으로 연락이 안 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였더라도 모든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전형료

구분	모집단위	전형료	비고
일반학과	인문·사회계(전 학과), 자연계(전 학과), 예술계(예술문화영상학과)	60,000원	인터넷 수수료 포함
예술대학	음악학과, 한국음악학과, 무용학과, 조형학과, 디자인학과	90,000원	

※ 북한이탈주민은 전형료를 면제함

4. 서류제출 안내

•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기간 : 2026. 7. 7.(화) ~ 2026. 7. 13.(월) - 등기우편 : 2026. 7. 13.(월) 소인까지 인정
제출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낼 곳 : 우)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입학처 입학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담당자 앞 ※ 방문제출 불가
제출 방법	발송용 봉투 표지(원서접수 완료 후 출력가능)를 봉투에 붙여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제출기간 내에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이외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의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원본 확인 후 반환합니다.
(사본일 경우 공증을 받아 제출 가능)
※ 원본 서류 반환 요구 시에는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 국외 발급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영사)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공증은 해당 문서가 발급된 국가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외국학교 학기기록표(서식 3)는 지원자가 제출한 외국학교 학사일정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출력물 등 학사일정표 제출 시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하고 제출하여 주십시오.
- 포트폴리오(서약서 포함)는 조형학과, 디자인학과 지원자에 한하며, 반드시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최종 합격(등록)자 추가 서류제출

유의사항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격 이후에도 지원자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제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우편 제출 • 보낼 곳 : 우)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입학처 입학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담당자 앞

가. 원서접수 당시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영사확인서) 미제출자

- 제출서류 : 외국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 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아포스티유(영사)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아포스티유, 영사확인서 발급문의 : 영사민원24 콜센터 (02-6747-0404)

- 제출기한 : 2027. 2. 12.(금)
- ※ 원서접수 당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이미 제출한 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나. 해외고 졸업예정자

- 제출서류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 ※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영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아포스티유(영사)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 제출기한 : 2027. 2. 12.(금)

다. 원서접수 당시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일(2027년 2월 26일까지) 기간을 포함하여 지원자격이 충족된 자

- 제출서류 :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고교 졸업증명서, 보호자 재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지원자격 관련 서류
 -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영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제출기한 : 2027. 3. 3.(수)
- ※ 원서접수 당시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VIII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

구분	일정	총원 합격자
합격자 발표	2026. 9. 18.(금) 16:00 예정	2026. 12. 24.(목) 18:00 예정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2026. 12. 21.(월) 10:00 ~ 12. 23.(수) 16:00	2026. 12. 24.(목) 18:00 ~ 12. 27.(일) 12:00
등록금 납부	2027. 2. 10.(수) 10:00 ~ 2. 12.(금) 16:00 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학정보홈페이지(<http://go.pusan.ac.kr>) 에서 확인

※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총원 합격 발표 없음

2. 합격자 유의사항

- 지원자는 입학정보홈페이지(<http://go.pusan.ac.kr>)에서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합격사실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합격자는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에 공고된 안내사항(합격증 교부일시, 등록일시 등)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온라인 문서등록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등록 유의사항

- 온라인 문서 등록, 고지서 출력, 등록금 납부 등은 합격자 발표 시 상세히 안내합니다.
- 지정된 기간 내 온라인 문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온라인 문서 등록을 완료하더라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합격자도 지정된 기한까지 고지된 납입금액(학생의료공제회비)을 지정은행에 납부하여 등록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본교에 합격하고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에 총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정보홈페이지(<http://go.pusan.ac.kr>) “온라인등록포기시스템”에서 등록포기 신청을 완료한 후 다른 대학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이중 등록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하며, 입학 후에도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IX 지원자 유의 사항

1. 기본사항

- 접수된 입학 원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지원 학과(전공)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에 해당될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합니다.
 ※ 개인적인 사정 등에 의해 면접(실기)고사에 결시한 경우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 기간 중 모든 공지 사항(합격자 발표 포함)은 우리 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합니다.
- 구비 서류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모집요강에서의 요구 사항 불이행, 주소 불명, 연락두절, 합격자 명단의 미확인, 입국 수속 절차 불이행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 취소 등)은 지원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지원자 또는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하고 졸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위를 취소하며,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합니다.
 -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우리 대학교에서 입학이 취소된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우리 대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당시 졸업예정자 등 조건부 지원자격 충족자는 합격 후 2027. 3. 3.(수)까지 반드시 지원자격관련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2. 원서접수 관련사항

-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지원하는 자는 수시모집 모든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에서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북한이탈주민 전형,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형,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6회 지원대상에서 제외)
 -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접수가 취소됨.
-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우리 대학교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입학정원 2% 이내),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은 전형 간 복수지원이 불가하며, 지원자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형, 북한이탈주민 전형,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제외)
- 복수국적자는 국내 「국적법」 제11조의 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우리 대학교는 대학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및 이용항목 : 성명(보호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국적, 주소, (휴대)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이메일 주소, 해외수학 및 체류기간(보호자 포함), 지원자 학교정보, 환불계좌번호 등
- 수집된 개인 정보는 대학 입학, 장학, 학사, 통계업무, 신입생 예비대학 및 오리엔테이션, 추수관리, 기타 안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원서 접수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서식1】

※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인터넷 원서접수 시 기재사항 입력 후 출력 및 제출

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원서					수험번호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어)			국 적				
지 원 사 항	대학		학과(부)		지원자격 구분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입학정원 2% 이내)		사 진 (3cm×4cm)
	전 공		약기명(분야)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연락처	국내	주 소						
		전 화		본인 휴대폰				
		e-mail		보호자 휴대폰				
	국외	주소						
전화		휴대폰						
국내학교 해당과정	재학기간		학력사항	출 신 학 교				
				주 소		전화번호		
	초	년 월 일 ~ 년 월 일		학교 졸업				
	중	년 월 일 ~ 년 월 일		학교 졸업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학교 졸업(예정)					
총 재학기간			년 월 일					
보호자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재직기간:)					
전형료 환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본인은 위 기재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귀 대학교에 지원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부 산 대 학 교 총 장 귀 하								

【서식2-2】

지원 자격 심사 신청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초·중·고 수학기간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이름																
학 교 명	학교소재지		재학기간	해당하는 학년, 학기에 ● 표시(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경우 ▲표시)															
	국가명	도시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특이사항(월반, 조기졸업, 학기 성적기록 누락, 휴학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만 아래의 표에 기재)

내 용	기 간	학년 / 학기	사 유	관련 증빙자료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부 산 대 학 교 총 장 귀 하

【서식3】

외국 학교 학기 기록표

학년	학교명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학년	(학년제)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학년	(학년제)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학년	(학년제)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학년	(학년제)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학년	(학년제)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학년	(학년제)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학년	(학년제)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학년	(학년제)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학년	(학년제)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학년	(학년제)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 학교명은 반드시 공식 명칭을 기재하되, 해외 소재 중·고교만 기입함(school calendar 등 제출한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 본인이 재학한 중·고교 해외학교의 모든 학기를 기재(본인이 재학한 기간이 아닌 학교의 학기 시작일 및 종료일)
- ※ 3학기제 혹은 4학기제 해당학교는 3학기, 4학기란에 학기 내용을 기입함(2학기제 학교의 경우 3,4학기 란은 기재하지 않음)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부 산 대 학 교 총 장 귀 하

[서식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25. 5. 30.>

(앞쪽)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약칭: 사실증명신청서, 약호:A322)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will be required to present only their ID cards without having to complete this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input type="checkbox"/>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열람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 포함 [] 미포함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체류지 영문표기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address in English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 포함 Yes []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부터(from) 까지(to)		체류지 영문표기 여부 Address in English [] 표기 Yes [] 미표기 No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 (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OO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OO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OO Si·Gun·Gu or Eup·Myeon·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년(Year) 월(Month) 일(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mm×297mm[백상지(80 g / m²) 또는 중질지(80 g / m²)]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Consent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본인은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hereby consent to the electronic verification of the applicant's required documents, in relation to the exemption of fees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through the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n case of refusal to consent to the verification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relevant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앞쪽 신청인의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전화번호란에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각각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가.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Where a principal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1)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2)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only when the spouse is deceased and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of those listed in the category 1)]

나.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다.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7.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

【서식6】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입학정원 2% 이내) 지원자 부모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리 대학교는 2027학년도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입학정원 2% 이내) 입시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비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가족관계, 국내 출입국 기록, 재외국민 등록정보, 국외 재직 기록	입학전형업무 수행 (지원자격 검토)	10년	대학입학 전형관리 및 공정성 검증을 위한 보유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자격 심사가 불가하므로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비고
<u>여권번호</u>	입학전형업무 수행 (지원자격 검토)	10년	대학입학 전형관리 및 공정 성 검증을 위한 보유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지원자격 심사가 불가하므로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지원자 부 성명 : (인 또는 서명)

지원자 모 성명 : (인 또는 서명)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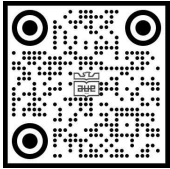
지원자 : (지원학과)

(수험번호)

(성명)

대학생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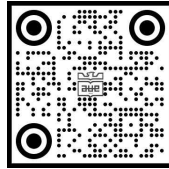
01



[등록금 안내]

재무과
051) 510-1051, 1059

02



[장학제도 안내]

학생과
051) 510-1281~2, 1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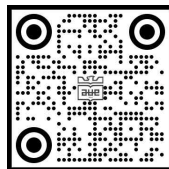
03



[학사제도 안내]

학사과
051) 510-1212(학적). 1221)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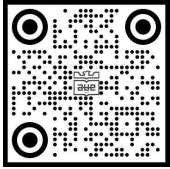
04



[Global Studies Program(GSP)]

GSP행정실
051) 510-7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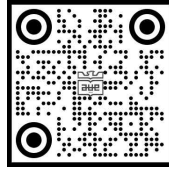
05



[해외 봉사 활동 프로그램 안내]

학생과
051) 510-1251, 3322, 1368

06



[해외 파견 프로그램 안내]

국제협력실
051) 510-3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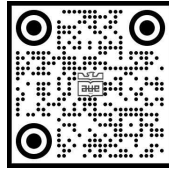
07



[도서관 안내]

중앙도서관 / 새벽별도서관
051) 510-1800 / 510-1303

08



[외부 교육인증제 안내]

교육인증원
051) 510-3735, 744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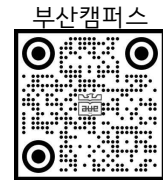


[직원상담원 안내]

부산캠퍼스 051) 510-3705
양산캠퍼스 051) 510-8117
밀양캠퍼스 055) 350-5246~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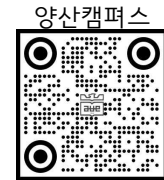
[대학생활원(기숙사) 안내]



051) 510-7827



055) 350-5707



051) 510-8397, 8592

기관별 전화번호 안내

부서		전화번호	담당 업무
입학처 입학과		051) 510-1202~3, 1063~4	대학입학전형(수시, 정시)
재무과		051) 510-1051, 1059	등록금 안내
학사과		051) 510-1212	졸업, 휴·복학 정보 안내
		051) 510-1221	수업 정보 안내
		051) 510-1211	증명 및 발급 안내
학생과		051) 510-1281~2, 1272, 1277, 1237	장학 제도 안내
취업전략과		051) 510-1283~4, 3703, 3706, 3711, 1957	취업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국제협력실		051) 510-1258, 3875	국내 교류
		051) 510-3652, 1873	국제 교류
		051) 510-3352	외국인 지원
교양교육원		051) 510-3844~6	교양 교과 지도·안내
언어교육원		051) 510-3301~2, 3305	한국어·외국어 교육
교육인증원		051) 510-3735, 7444	교육인증제 안내
장애학생지원센터		051) 510-3577	장애인 지원상담
학생군사교육단		051) 510-1896~7	ROTC 학군사관 안내
대학생활원	부산캠퍼스	051) 510-7827	대학생활원(기숙사) 관리
	밀양캠퍼스	055) 350-5707	
	양산캠퍼스	051) 510-8397, 8592	
도서관	중앙도서관	051) 510-1800	
	새벽별도서관	051) 510-1303	
단과대학 행정실	인문대학	051) 510-1503~5, 1584~5	
	사회과학대학	051) 510-1552, 1554~5	
	자연과학대학	051) 510-1756, 1764~5, 1679, 1754, 1796	
	공과대학	051) 510-1405, 1410	
	경제통상대학	051) 510-1654~5	
	경영대학	051) 510-7663~5	
	생활과학대학	051) 510-1713~6	
	예술대학	051) 510-1731~2, 1734~5	
	간호대학	051) 510-8310~3	
	생명자원과학대학	055) 350-350-5151~6	
	정보의생명공학대학	051) 510-8540~3	